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제재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5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제재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3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제재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칭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7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이 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 ----- ----- -----

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u>해당한다</u>),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 16. (생략) ⑥·⑦ (생략)	----- ----- ----- ----- <u>해당한다</u>, 제33조제5항----- ----- ----- ----- ----- ----- ----- ----- ----- 2.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²⁾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³⁾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교

- 1)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2)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등록기관’이라 함)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 직원 또는 등록기관이라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교육을 받게 하면서 법정 내용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험상품·금융상품·건강식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고, 이렇게 등록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무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처분을 받거나 근로자들이 원치 않은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등록기관 사칭을 법률로 금지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3)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 고용노동부)」, p.72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등록기관 사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 또한 등록기관 사칭은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 볼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신뢰성·효과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관한 제재규정 신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45